

#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16.

발의자 : 김도읍 · 추경호 · 김규환

김기선 · 성일종 · 곽대훈

김정재 · 윤종필 · 김광림

김성찬 · 강효상

의원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m<sup>2</sup>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「부동산등기법」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. 연면적 200m<sup>2</sup>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 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m<sup>2</sup>인 것을 감안하여 제한한 것임.

그러나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m<sup>2</sup>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축사의 일부 동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m<sup>2</sup>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5호).

법률 제 호

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등기 요건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 는 건물로 본다.</p> <p>1. ~ 4. (생 략) 5. <u>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</u> <u>과할 것</u></p>	<p>제3조(등기 요건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</u> <u>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</u> <u>할 것</u></p>